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률 제2120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내용

- 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실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철강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실시 방식과 통계 작성 범위, 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 라.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재검토 및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 마. 철강분야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 대상 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바. 철강분야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

사. 철강분야 실증시험·성능검증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9조)

아.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및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제22조)

자.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인증 절차, 지원 사항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제29조)

차.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제32조)

카. 저탄소철강 제품 수요 창출을 위한 우선구매 계획수립 요청 가능 대상 기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33조)

타. 저탄소철강 특구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제37조)

파.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제40조)

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전력망·용수 공급망·수소 공급망의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시 행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41조)

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특성화대학의 지

정 및 해외 우수인력 조사·분석 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2조~제46조)

너.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기준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47조)

더. 기업결합 심사기간 세부사항, 공동행위 승인 절차 및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8조~제50조)

러. 권한의 위임·위탁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51조~제5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규제심사 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제2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 통상규제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 재생철자원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철강산업의 육성·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철강산업의 육성·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 실행계획

의 이행실적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철강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철강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현황 및 발전전망 관련 정보를 보유·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 생산·소비·수출입 현황
2. 철강 원료 수급 현황
3. 철강 생산 설비 현황
4. 철강사업자 재무 정보 현황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철강산업 관련 통계 작성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균형있게 위촉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강산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위원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저탄소철강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저탄소철강기술을 재검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 도래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⑥ 저탄소철강기술의 재검토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은 “법 제10조제2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재검토의 세부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철강사업자 등 저탄소철강기술 관련 기관·단체 또는 기업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과제
2. 책임자
3.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4.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대상 기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6조(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 실증·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
4.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집행 지원
5. 법 제12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활용 실적의 취합·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융자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20조에 따른다.

제18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시설·설비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운영 계획
3. 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실증시험·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의 축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
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
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
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증설 및 개선

2.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3.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저탄소철강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

강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을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2.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생산량·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7조(인증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저탄소철강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저탄소철강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탄소철강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가목의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유지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 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29조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저탄소철강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저탄소철강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운영·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저탄소철강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것

나.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2. 인증시험평가기관

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것

나.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다.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평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20조제3호부터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창출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철강산업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제5장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철강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철강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저탄소철강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제35조(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

상부장관에게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강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저탄소철강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저탄소철강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철강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저탄소철강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저탄소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철강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철강특구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

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철강특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철강특구의 명칭·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철강특구의 명칭·위치
2. 해당 철강특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

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1. 연구개발시설
2.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철강특구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각 호의 사업 및 철강특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1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제38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할 것
2. 재생철자원 가공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
3.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무능력을 갖추는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재생철자원 가공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재생철자원 가공사업이 어렵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확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2.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소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 이후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제42조(인력양성 및 확보)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4조(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철강산업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철강산업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산업등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 철강산업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철강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 조정
4. 철강산업등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산업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제47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 관련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② 제1항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 초과에 관한 사항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철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강산업 구조전환 계획서
2. 규제 특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명서
3. 특례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및 안전성 평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철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특례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철강산업 구조전환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포함한다)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7조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9조(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 사업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2. 공동행위의 개요

가. 공동행위 내용

나. 공동행위 사유

다. 공동행위 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시하고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 방법

2.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및 업계 현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나.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다. 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 수의 변동상황

라. 당해 상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상황(최근 1년간은 월별로 구분)

마. 당해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

- 바. 당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
- 3.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
- 4.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참가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의 실시 상황
 - 나. 가목의 노력만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
- 5.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
 - 나.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
- 6.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또는 공동행위에 참가·탈퇴의 제한 여부
- 7. 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향
- 8.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 가. 당해 업종에서 연구·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 효과
 - 나. 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기술개발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 다. 당해 연구·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제2항의 서류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행위대표사업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 또는 부실 기재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요청일부터 보완 완료일까지의 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할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신청의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정보교환”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신고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보교환 참여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정보교환의 목적

3. 정보교환의 방법

4. 교환되는 정보 목록

5. 정보교환 전담조직, 구성원 및 정보취급자

②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교환을 할 것

2. 정보교환의 대상 및 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정보취급자 외에는 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3. 개별 거래처별 가격 등 경쟁상 민감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익명화, 데이터 통합처리 등을 거칠 것

4. 교환된 정보가 제1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대장 작성, 외부기관 또는 독립적 전담조직을 통한 정보교환, 정보의 흐름을 감독·통제하기 위한 관리자의 지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5.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사업재편 미승인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정보교환 중단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교환된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
2. 법 제10조, 법 제11조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재검토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업무 및 제1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요청의 접수 업무
3.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실증기반의 확충, 실증·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업무
4. 법 제15조, 법 제16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업무 및 제20조에 따른 경쟁력강화계획서의 접수 업무
5. 법 제23조부터 법 제25조까지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업무 및 제35조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의 접수 업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취소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 및 제39조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업무
7. 법 제32조,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특성화 대학의 지

정, 취소 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업무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와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의 접수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게 위탁한다.

1. 인증운영기관 :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

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 비용의 수납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

마.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

2. 인증시험평가기관 :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제49조제1항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행위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사업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자)		

공동행위 내용 (상세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필요)	☐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도는 감산에 관한 협의 ☐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 공급능력 축소 도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 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원료 등의 공동구매 ☐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	--

공동행위 사유	
---------	--

공동행위 기간	
---------	--

참가 사업자 현황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1				
2				
3				

본 신청인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행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실시하고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 방법 2.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3.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4. 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 수 변동상황 5. 당해 상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생산능력 · 수급현황 · 가격변동상황(최근 1년간을 월별로 구분) 6. 당해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 7. 당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 8.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 입증 자료 9. 참가사업자의 자체적 사업합리화 노력 실시 상황 10. 자체 노력만으로 산업위기 극복 불가 이유 11. 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 · 기술혁신 ·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 자료 12.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 · 효율성 증대 효과 비교 자료 13.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또는 공동행위에 참가·탈퇴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14. 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향 입증 자료 15.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 가. 당해 업종에서 연구·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나. 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기술개발 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다. 당해 연구·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정보교환 사전신고서 (제50조제1항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고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참여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정보 교환 개요	정보교환 개시예정일	
	사업재편계획 승인여부	[] 승인기업(승인일: 년 월 일) [] 미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제출예정일: 년 월 일)
	정보교환 목적	
	정보교환 방법	※ 별지에 최대한 자세히 기재
	교환되는 정보 목록	
	전담조직 및 구성원	※ 정보교환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직책 등 기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교환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정보교환의 목적, 방법,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예) 기업 간 비밀유지협정서, 정보교환을 위한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등
------	--

정보교환 중단신고서 (제50조제2항 관련)

신고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정보교환중단일	년 월 일
중단사유	
조치계획	※ 정보 폐기 처리계획, 인사조치 계획 등

20 년 월 일 신고한 정보교환을 중단하였으므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탄소철강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500	7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연 락 처	(044) 203 - 4694